

서울고등법원 2023. 6. 7 선고 2022나2043628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B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)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

담당변호사 구성진

변 론 종 결 2023. 4. 12.

판 결 선 고 2023. 6. 7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. 10. 12. 선고 2021가합5572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E와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회사’라고 한다) 사이에 2015. 5. 20. 체결된 52,000,000원의 현금증여계약, 2015. 6. 2. 체결된 168,000,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선택적으로, E와 피고 D 사이에 2015. 5.

20. 체결된 52,000,000원의 현금증여계약, 2015. 6. 2. 체결된 168,000,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 D은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E와 피고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5. 2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,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경란, 판사 권혁중, 판사 이재영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포천시 L 대 1,583㎡

2. 위 토지 지상

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130㎡. 끝.

